

가 정 통 신 문

제 목

'살인 예고글' 장난이 아닌 범죄입니다.

최근 청소년이 묻지마 살인을 예고하는 범죄가 다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 장소를 거론하며 유사한 범행을 하겠다는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장난행위도 범죄임을 학생들에게 인지시켜 미연의 사태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난이 아닌 범죄!
살인 예고글

“ 장난이었는데, 범죄였다. 살인 예고글 ”

NEWS 살인 예고글 올린 10대

OO서 SNS에 살인예고 글 올린 고교생 검거..."장난으로"
너도나도 '묻지마 살인예고' 잡고보니 중학생.."장난이었다."

위기의 청소년

진짜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뭐~ 장난이지~

내가 한줄 모를거야, 한번쯤은 해도 되지 않을까?
호기심이 생기는걸?

✓ 인스타그램 등 SNS에 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는 장난이 아닌 범죄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형법 제283조(협박죄) / 형법 제255조(살인예비죄)
- ▶ 형법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유사사례를 목격하는 경우 112에 즉시 신고!

- ▶ 학생이라면 언제든지 117과 학교전담경찰관(SPO)와 상담 가능!

카카오톡 채널 '스쿨폴넷'을 통해 청소년 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경기남부경찰청

[처벌]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형법 283조)

2024년 2월 15일

대 야 초 등 학 교 장